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 | | |
|----------------------------|----------------------------|
| ■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15호)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70호) |
|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18호)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18호) |
| ■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459호) | ■ 백종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16호) |
| ■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03호)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34호) |
|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07호)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19호) |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43호) | ■ 곽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23호) |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596호)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35호) |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16호) |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84호) |
|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11호)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17호) |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검토의견	29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아동양육시설 등 추가 (김용만의원안)	29
2. 아동에 대한 금융·경제교육 지원 강화(유상범의원안)	37
3. 후견인 결격사유에 「민법」 준용 명시(김용만의원안)	44
4.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상한 확대(김재섭의원안) ..	53
5. 직권 출생기록 아동 정보처리 및 자료요청 근거 마련 (이주영의원안)	59
6. 아동의 놀 권리 명시 및 장애아동 시설 접근성 강화 (안태준의원안)	66
7.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백선희의원안)	78
8. 보호자 대상 범죄 노출을 정서적 학대로 명시(고동진의원안) ..	88
9.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야외활동 지원 근거 마련 (이주영의원안)	97

10.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피해아동 회복 지원 근거 마련 (윤준병의원안)	104
11.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시 정보제공 근거 명시 (박정하의원안)	113
12. 아동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확인 근거 마련 (백중헌의원안)	119
13. 피의자 체포·구인 시 피보호아동 확인 의무 부과 (백혜련의원안)	125
14. 아동보호 실태조사 시 대면·신원확인 의무화 및 조사권한 강화(이춘석의원안)	131
15.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사업 국비 우선 보조(곽규택의원안) ..	137
16.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주거·돌봄 명시 (이연희의원안)	142
17. 음주운전 중 아동 동승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 (장종태의원안)	146
18.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명확화 및 평가 기반 개선 권고 (김미애의원안)	153

I. 제안경위

1.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1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2. 12.
- (3) 회 부 일 : 2026. 0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2.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8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유상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2. 12.
- (3) 회 부 일 : 2026. 0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작동방식 등의 지식, 합리적 소비습관,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에 달했으며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3.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4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3. 13.
- (3) 회 부 일 : 2026. 03.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사람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민법」에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위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김재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섭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3. 24.

(3) 회 부 일 : 2026. 0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5.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0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3. 31.
- (3) 회 부 일 : 2026. 04. 0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기록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서류상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해당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관련 권한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출생이 신고될 뿐 해당 아동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출생신고 전후의 시기는 아동

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위기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확인 및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6.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04. 15.
- (3) 회 부 일 : 2026. 04.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
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제4조제8항·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7.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5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04. 24.
- (3) 회 부 일 : 2026. 04.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8.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7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6. 04. 29.
- (3) 회 부 일 : 2026. 04.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9.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06. 25.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며, 10대 아동의 비타민 D 결핍률은 약 70~80%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야외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0.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6. 29.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도 및 시·군·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11.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6. 30.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고 그 사유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음.

이에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12. 백중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중헌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07. 02.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자영업자·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13.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7. 03.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4.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07. 23.
- (3) 회 부 일 : 2026. 07.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질문·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15.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07. 30.
- (3) 회 부 일 : 2026. 0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호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16. 이연회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연회의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07. 30.
- (3) 회 부 일 : 2026. 0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돌봄·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발달·정서·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절실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서비스별 지원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서비스 제공 시점과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대상자의 연령이나 위기 정도 등에 따라 사례관리 주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등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더라도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보호자가 생계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빈곤 상황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는 약 8만 2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지원 등 이미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호조치 이전 단계에서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 및 기관간의 주거·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협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17.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8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8. 03.
- (3) 회 부 일 : 2026. 08. 0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18.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51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8. 10.
- (3) 회 부 일 : 2026. 0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II. 검토의견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아동양육시설 등 추가(김용만 의원안)

-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 ----- ----- ----- ----- ----- ----- ----- -----.
<신 설>	1.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 4.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u>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6. 「<u>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어린이놀이시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2조제1항).

○ 주변구역이란 도시공원의 경우 출입문을, 그 밖의 시설은 부지 외곽경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말함(시행령 제29조제4항).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재량행위이지만,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32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시·도, 49개 시·군·구에 총 1,07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주변구역이 45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시공원 주변구역(376개소), 어린이집 주변구역(172개소), 유치원 주변구역(73개소) 순임.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는 총 9,847대로, 부산 5,393대, 경기 1,760대, 서울 1,209대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2025년 10월 기준)>

(단위: 개소, 대)

시도	계	시설별(개소)				CCTV 설치 대수
		도시공원 (1호)	어린이집 (2호)	초등학교 특수학교(3호)	유치원 (4호)	
서울	297	143	16	131	7	1,209
부산	200	7	52	123	18	5,393
대구	27	19	2	6	0	171
인천	14	0	5	6	3	14
대전	147	66	32	23	26	147
경기	67	9	7	51	0	1,760
강원	33	31	1	1	0	56
전북	104	35	19	34	16	245
전남	114	21	38	52	3	508
경북	25	25	-	-	-	138
경남	43	20	-	23	-	206
계	1,071	376	172	450	73	9,847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위 아동보호구역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각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법 제52조제1항제1호) 2024년 12월말 기준 239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법 제52조제1항제2호) 2024년 12월말 기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법 제52조제1항제8호) 2025년 12월 기준 4,17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어린이놀이기구는 그네·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¹⁾ 2026년 2월 기준 84,93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그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이 아동의 이용이 당연히 전제되는 시설뿐 아니라 주택단지, 목욕장업 영업소, 식품접객업 영업소, 대규모점포 등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함.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법률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법」	휴게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의료법」	의료기관
「주택법」	주택단지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
「관광진흥법」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법」	하천구역, 하천시설

□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아동복지시설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어린이놀이기구는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지정 대상에 포함할 경우 아동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동보호구역 제도의 취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순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집중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데, 지정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오히려 범죄예방 조치가 분산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낮아질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기구는 84,930개소에 이르고 식품접객업 영업소(1,351개소), 대규모점포(88개소), 목욕장업 영업소(82개소) 등 아동이 필수적·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주변구역까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어린이놀이기구 현황 >

(단위: 개소수)

총계		84,930	
주택단지	45,768	자연휴양림	139
도시공원	12,374	육아종합지원센터	129
유치원	7,302	학원	106
어린이집	7,087	박물관	102
학교	6,920	대규모점포	88
놀이제공영업소	1,849	하천	85
식품접객업소	1,351	목욕장업소	82
아동복지시설	431	공공도서관	55
종교시설	424	유아교육진흥원	47
주상복합	346	도로휴게시설	33
야영장	182	의료기관	30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

□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대상 범위의 과도한 확대 등을 언급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명	내용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유괴 등에 취약한 저연령 아동과 장애아동에 집중하여 운영 ○ 보호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등 실제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아동보호구역 운영 목적은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 ○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목욕장 영업소 등과 같이 범위가 매우 넓어 보호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 발생 * (지역아동센터) 4,176 (어린이놀이시설) 목욕장 영업소, 식품접객 영업소,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포함, 전국 84,929개
경기도	□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이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수가 많고 분포가 광범위하여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운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

2. 아동에 대한 금융·경제교육 지원 강화(유상범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게 실시하는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 <u>자산형성지원</u> ”이라 한다)	2. ----- -----(<u>“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u>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u>자산관리 지원사업</u>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생 략) <u><신 설></u>	지원사업) ① ----- ----- ----- -----<u>금융·경제 교육 등 자산관리 지원사업</u>-----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제42조에 따라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	--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법 제3조제4호)²⁾.

□ 보호대상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하는데³⁾ 이들을 일반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이라 지칭하고 있음.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어려운 점은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58.5%)이라고 응답했으며,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4.1%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보호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통합
거주할 집 문제	23.6	13.2	8.9	45.3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	22.1	10.4	12.9	44.7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	21.4	22.2	15.9	58.8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8.1	13.4	13.2	34.1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따른 외로움 등 심리적 부담	7.0	11.2	16.2	33.6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5.5	6.2	3.3	14.8
아프거나 긴급사고시 도움청할 곳 부족	3.9	8.1	7.3	18.9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역자원과 정보의 부족	3.4	7.4	12.1	22.4
음식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3.2	5.1	5.7	13.7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1.8	2.9	4.5	9.1

자료: 이상정 등,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2020, p.407.

3)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2026년 4월 2일에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0885호)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

개 정 전	현 행(2026. 4. 2. 시행)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u>자산형성지원사업</u>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자산형성지원사업</u> 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u>선정·관리</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 <u>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u> -----. ② ----- <u>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u> ----- ----- <u>선정·관리, 각 사업의 방법·절차</u> -----.

주: 제42조 이외에 제43조, 제44조 및 제59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제42조에 따라 아동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예시로 “금융·경제 교육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특히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국가가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호는 위 4월 2일에 시행된 개정법률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조치에 대한 약칭을 현행 “자산형성지원”에서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수정해 법률 내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 <u>자산형성지원</u> ”이라 한다)	2. ----- ----- (“ <u>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u>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나아가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아동이 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지원 사업이 실제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과 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협동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음(법 제52조제1항).

□ 참고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경제 교육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 자산관리 교육’,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세금교육’,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등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아동에 대한 위 금융·경제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아동 대상 금융·경제 교육 사례>

사업명	소관 기관	주요내용
디딤씨앗통장 자산관리 교육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으로 경제 교실 실시(‘25) *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KB라이프생명 협업
청소년 세금교육	국세청	청소년 세금교육을 통한 올바른 납세의식 정립 * 세금교과서 및 교구재 제작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경기도	자산관리 진로탐색 등 자립기술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경제·금융교육 지원	경기도 안양시	교과과정과 연계한 안양형 경제·금융교육 * 관내 65개교(초등41, 중등24)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 금융교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연령별 이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교육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규정하는 시행일(2026년 4월 2일)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시행일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입장이지만 금융·경제 교육을 추가하는 안 제42

조제1항에 대하여는 부령에 반영하는 방식이 타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는 노무 교육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관	개정안	의견
보건 복지부	제38조제1항제2호, 제57조제2항	수용
	제42조제1항	○ 불수용 - 자산관리지원사업에서 금융·경제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아동복지법 제42조제2항에서 각 사업의 방법·절차 등 구체적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보다 보건복지부령에 반영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 아동 복지 협회	제42조제1항	○ “자산형성 및 금융·경제 교육 등 관리사업”에 “금융·경제” 외 “노무” 교육 추가 필요
	제57조	○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은 시설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 책임을 함께 분담하는 협력체계 필요

3. 후견인 결격사유에 「민법」 준용 명시(김용만의원안)

- 개정안은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관하여 「민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략)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u>제4항</u>-----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후견 제도는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 후견 제도의 일반법은 「민법」이고 그 종류는 크게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음.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함(동법 제928조)⁵⁾.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동법 제9조)⁶⁾. 양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

구분		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선임사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수	1명	여러 명 가능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감독기관	법원, 후견감독인	법원, 후견감독인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5)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6)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나아가 「민법」은 후견인(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 포함)의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 >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제도는 일반법인 「민법」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각 제도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그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등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개별 법률에서 후견제도를 규정한 입법례(보건복지부 소관) >

제명	내용
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u>후견인의 선임</u> 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u>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u>미성년후견인</u> 이 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 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 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시·도지사등이 <u>후견인</u> 이 된다. (단서 생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 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 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u>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 는 특정후견의 심판</u> 을 청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도 유사한 내용 규정

□ 그 중,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
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
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법 제19조제1항).

□ 나아가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법 제2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상 후견인 선임절차 관련 조항 >

「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위 「아동복지법」 과 「민법」 에 따른 미성년후견 조항을 비교하면 후견인 선임 청구요건, 청구권자, 임시후견인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미성년후견 관련 「민법」 과 「아동복지법」 의 비교 >

구분	「민법」	「아동복지법」
청구요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
임시 후견인	-	후견인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법원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자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 현행 「아동복지법」에 후견인 결격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법인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이 「아동복지법」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상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민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임.
- 참고로 「민법」 제937조에 열거되어 있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53)도 발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53)>

현행	개정안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u>	4.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가. <u>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u> 나.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u>

5. ~ 9. (생략) <신설>	<u>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u> <u>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u> <u>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 9. (현행과 같음) 10. <u>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u>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u> <u>전문의가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u>은 제외한다.</u>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 <u>류에 중독된 사람</u> 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 <u>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u> <u>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u> <u>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u> <u>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u> <u>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u> <u>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u> <u>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 <u>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u> <u>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u> <u>아니한 사람</u>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 <u>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u> <u>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u> <u>한 사람</u> 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 <u>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u> <u>아니한 사람</u>
---------------------------------------	--

	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개정안은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등이 추가되는 것을 전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후견인에도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된 후견인 결격사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후견인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민법」을 준용하고 있는(같은 법 제9조) 입법례도 있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준용 조항이 없어도 「민법」이 적용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직무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4.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상한 확대(김재섭의원안)

-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생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u>10년</u>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u>30년</u>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약식명령을 포함)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 등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 취업제한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⁷⁾.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 아동학대관련범죄란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②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함. 각 법률의 해당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법률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한편,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음.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1.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유사 입법례에서는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취업제한기간 유사입법례 >

제명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u>10년</u> 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u>10년</u> 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② 취업제한 기간은 <u>10년</u> 을 초과하지 못한다.

-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기관명	내용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 다만, 성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취업제한 명령 기간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 강화라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 다만, 현행 타 법률의 취업제한 기간과의 형평성 고려할 필요 아울러 30년이라는 기간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최대 범위(20년 이상)를 초과하는바, 제재의 적정성 및 비례성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 요청

5. 직권 출생기록 아동 정보처리 및 자료요청 근거 마련
(이주영의원안)

☐ 개정안은 위기사동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제15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의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4항----- ----- ----- ----- -----.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 ----- ----- -----.

-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약 72만 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약 10만 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 751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신고 또는 수사의뢰를 하였음.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위 정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의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각 조문 내용은 다음 표 참조), 즉 출생통보제에 따라 직권으로 출생이 기록된 아동에 관한 출생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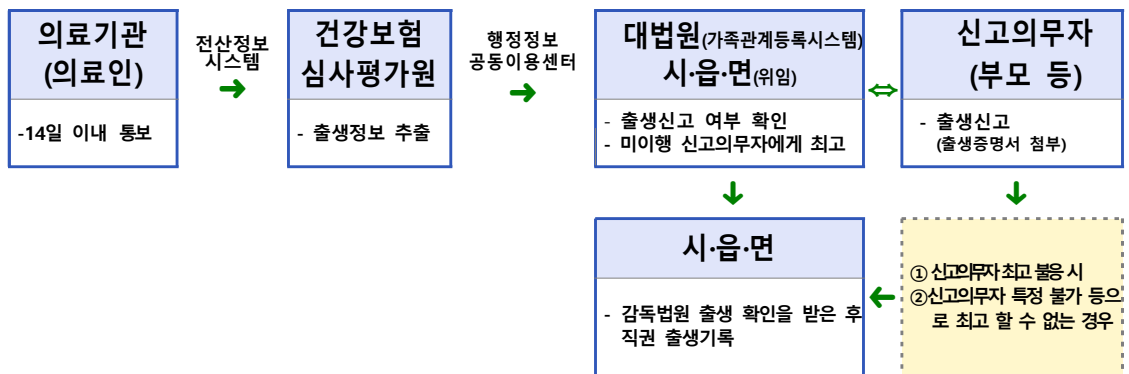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이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는 제도로써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기간인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함(같은 법 제44조의4).

-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함(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⁸⁾.

<출생통보제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2026년 3월까지 약 21개월 동안 분만의료기관 439개소에서 444,752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음. 참고로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⁹⁾, 출생통보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음.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9) 2024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기준

□ 그런데 직권 출생기록은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위기신호로 볼 수 있음.

□ 결국 개정안은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남아 있는 아동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직권으로 출생이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처리대상 정보에 포함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려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12. (생략)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직권 출생기록이 이루어진 건수는 14건 이고(2024. 7. 19.~2025. 11. 30. 기준)¹⁰⁾ 같은 기간 직권 출생 기록이 유예된 아동, 즉 직권 출생등록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중단된 아동은 381명임¹¹⁾.

○ 유예 사유의 대부분(354명, 92.9%)은 친자관계 관련 재판 계속으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 199건, 친생부인의 소 96건, 아버지를 정하는 소 50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9건임.

< 직권출생등록 유예 현황 및 사유 >

구분	건수	비율	비고
친자 관련 사건 (소송·비송) 진행	354건	92.9%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199건) • 친생부인의 소(96건) • 아버지를 정하는 소(50건)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9건)
기타 사유	27건	7.1%	-
계	381건	100%	-

자료: 허민숙, 『친생 추정에 막힌 381명의 ‘식별된 그림자 아동들’』, 국회입법조사처, 2026. 2.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으로, 보호자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과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직권출생기록된 아동 등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10) 같은 기간 출생통보 건수는 345,992건으로, 통보 1건당 출생기록이 이루어진 비율은 0.004%임.

11) 허민숙, 『친생 추정에 막힌 381명의 ‘식별된 그림자 아동들’』, 국회입법조사처, 2026. 2.

6. 아동의 놀 권리 명시 및 장애아동 시설 접근성 강화

(안태준의원안)

- 개정안은 아동의 휴식·여가 및 놀이·문화예술 참여권을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관련 책무를 명시하며,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개발·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2조제5항, 제3조제12호, 제4조제8항,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제5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 이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조(기본 이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장애아동”이란 장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가 있는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생략)

<신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신설>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
음)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
· 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
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
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
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주거에 관한 사항

4. <u>재원조달방안</u> 5. <u>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6. <u>아동의 놀이·여가에 관한 사항</u> 7. <u>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u> 8. <u>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u> 9. <u>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u> 11. <u>재원조달방안</u> 12. <u>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③·④ (생략)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u>설치</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아동이</u> 항상 이용할 수 있는 <u>아동전용시설</u>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u>설치</u> 등) ① ----- <u>아동이</u> <u>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u> 등에 따른 차별 없이----- -----<u>아동전용시설</u> 및 <u>어린이놀이시설</u>(「<u>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어린이놀이시설</u>을 말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구를 말한다)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현행법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아동이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¹²⁾.

□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법 제4조).¹³⁾ 반면, 현행법에는 아동

12)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 휴식·여가·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권리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
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당사국이 문화·
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려는 취
지로 보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u>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u>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u>문화·예술·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u>

-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희망하는 놀이나
신체활동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2.9%인 반면 실제 참여 비율은 18.6%에 그쳤고, 신체활동이나 운동도 희망과 실제에 12.2%p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학원이나 과외의 실제 참여 비율은 54.0%로 희망 비율 25.2%의 두 배를 넘어, 아동이 희망하는 놀이·신체활동이 학습활동에 밀려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실제 참여활동과 희망활동 비교>

활동	희망(%)	실제(%)	차이(%p)
스마트폰 사용하기	44.9	44.5	-0.4
집에서 숙제하기	18.4	35.2	+16.8
친구들과 놀기(놀이터,PC방 등)	42.9	18.6	-24.3
학원이나 과외	25.2	54.0	+28.8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	19.7	7.5	-12.2
방과후 돌봄기관,청소년시설	2.2	3.8	+1.6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아동의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휴식·신체활동·또래관계 및 문화·예술 경험을 포괄하는 아동의 일상생활 영역이므로 아동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권리의 주체로 보아 그 놀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국가 등의 책무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법 제2조제2항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아동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조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는 생명·발달권, 의사표현권, 교육받을 권리 등 다른 권리와 균형 문제 등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다음으로 개정안 제7조제2항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을 재구성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아동의 권리·복지·건강·심리·정서·주거·놀이·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교육 및 보호자 지원 등 1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비교 〉

현 행		개정안	
호번호	내용	호번호	내용
-	<신 설>	제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2호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3호	아동의 건강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4호	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5호	아동의 주거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6호	아동의 놀이·여가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7호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8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9호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호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제10호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제2호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삭 제>
제3호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삭 제>
제4호	재원조달방안	제11호	재원조달방안
제5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아동의 권리·복지·건강 등을 비롯하여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경우 각각의 사항을 5년 단위로 점검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정책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현행 제2호의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와 제3호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을 삭제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고정됨에 따라 개별사항의 통합 및 조정 등 계획의 탄력적 수립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고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추진방법은 그 중요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건강·주거·놀이·교육 및 보호자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 제53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한 놀이기구의 예로는 단차 없이 완만한 경사도로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회전놀이기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한 미끄럼틀과 그네 등이 있음.

〈 통합놀이터 놀이기구 예시 〉

	
단차없이 완만한 경사로	휠체어 회전놀이기구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미끄럼틀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그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이러한 놀이기구의 개발·설치를 지원할 경우 장애아동의 놀이 시설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

신시설 등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사항을 규정¹⁵⁾하고 있고,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¹⁶⁾하고 있음.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1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휴식·놀이권 등을 기본이념조항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개별 정책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개정안 제7조는 현행법의 규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개정안 제53조제1항의 경우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는 현행법 제2조제1항 기본이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개정안 제53조제3항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7.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백선희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조의2(아동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 복지증진,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아동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아동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u>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 ----- ----- ----- <u>시·군·구</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재 국내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정책·행정의 중심에 두고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국제 지방정부 모델임¹⁷⁾.

□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비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의견 존중과 참여(제12조)가 실현되는 도시를 의미함¹⁸⁾.

17)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각국 대표가 채택한 결의안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12월 기준 전 세계 40여개 국가, 3천여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음.

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참고(<https://childfriendlycities.kr>, 최종방문 2026. 8. 5.)

□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처음 인증받은 이후 확대되어 왔으며, 2026년 7월 기준 1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추진 중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현황〉

지방자치단체	전국 총 지자체 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현황		
		총 개수	인증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19	4	2	2
경기도	32	21	20	1
경상남도	19	4	4	0
경상북도	23	9	5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9	17	15	2
대구광역시	10	2	2	0
대전광역시	6	3	3	0
부산광역시	17	10	9	1
서울특별시	26	25	23	2
울산광역시	6	3	2	1
인천광역시	11	5	5	0
전북특별자치도	15	6	6	0
제주특별자치도	1	1	1	0
충청남도	16	10	7	3
충청북도	12	8	8	0
세종특별시	1	1	1	0
총	243	129	113	16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공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5대 평가영역으로는
 ①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일반현황 및 사업현황, 아동권리 실태조사), ②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전담부서, 조성전

략,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독립기구), ③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아동참여체계,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④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내부정책조정기구, 민관협력기구), ⑤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아동친화적 공간 계획, 환경 개선)이 있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긍정적 사례를 살펴보면, 구 직영의 어린이 전용식당을 운영하여 저소득 및 일반 가정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강동구 어린이식당, 전국 최초로 구 사업비를 아동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에 투입하고 아동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는 성북구 아동참여예산제 등이 있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긍정적 사례 〉

구분	내용
강동구 어린이식당	전국 최초로 구 직영의 어린이 전용식당을 운영하여 저소득 및 일반 가정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
성북구 아동참여예산제	전국 최초로 구 사업비 1억원을 아동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에 투입하고 아동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
홍성군 온종일돌봄사업	충청남도 최초로 초등학교 유휴공간, 폐교시설,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공간을 운영하며 무상으로 급·간식 프로그램을 지원
광주 서구 올키즈존	광주 서구청을 제1호 올키즈존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올키즈존 조성 사업을 진행
천안 어린이꿈놀이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팝업 놀이터 등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조성을 운영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국내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국내 최초 상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운영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 상담, 권리교육 등을 진행
성남시 아동참여단	연 4회의 정기회의 및 아동권리증진 캠페인 등 진행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공 자료를 재구성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친화도시 제도화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추진과제에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이라는 대 주제 하에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리기준, 운영체계의 제도화 및 지속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중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항 >

1.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② 지역에서의 아동친화 환경 조성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리기준, 운영체계의 제도화 및 지속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적극 추진
* 민간(UNICEF)에서 지정, 전국 98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24)
** (예시) 아동친화도시 지정기준과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간 기준 일원화 검토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2025. 12. p.45.

-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아동친화도시와 유사한 현행 제도로는 여성친화도시(2009년 도입), 청년친화도시(2025년 도입), 고령친화도시(2026년 1월 도입)가 있음.
- 각 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가족부 소관), 「청년기본법」(국무조정실 소관) 및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소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친화도시 지정제도 비교 >

구분	근거 법률	지정 주체	시행	지정 실적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기본법」	성평등가족부	2009년	107개소
청년친화도시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2025년	3개소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	2026년 1월 24일	0개소

주: 지정 실적은 2025년 12월 기준

□ 위 3개 친화도시의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음.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친화도시 중 여성친화도시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③지역사회 안전 증진, ④ 가족친화(돌봄)

환경조성,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라는 5대 목표를 구현하려는 것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

5대 목표	내 용
①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설치 - 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성평등적 근무환경 조성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가족친화기업 확대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 돌봄노동자(주체)에 대한 돌봄 강화
⑤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사회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모든 분야의 성별 균형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 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자료: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최종방문: 2026. 8. 6.)

□ 2025년 12월 기준 여성친화도시는 서울 14개소, 경기 15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 10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25년 12월 기준)

지역	계	지정 도시
계	107	-
서울	14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	4	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대구	2	달서구, 수성구
인천	8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광주	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3	서구, 동구, 유성구
울산	-	-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15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	10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충북	7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10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전북	4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익산시
전남	9	강진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경북	6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8	거창군, 김해시, 남해군,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최종방문: 2026. 8. 6.)

□ 여성친화도시는 조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가 심사하여 선정하게 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최종방문: 2026. 8. 6.)

- 개정안에 대하여는 아동의 생활환경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문화, 안전, 돌봄 및 놀이공간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동친화도시의 지정을 통해 지역정책 전반에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이미 1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현재 유니세프에 의한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므로 동 제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지정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상 지정이므로 민간 인증인 유니세프 인증과는 구별되나 유니세프 인증과정에서 축적된 실태조사, 아동 의견수렴, 사업실적 및 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아동친화도시의 성공적인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 위원회에 ‘아동기본법안’ 제정안이 2건 계류되어 있는바 ‘아동기본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아동의 권리

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음.

< 아동기본법안 계류 현황 >

번호	발의자	발의일	제안이유 요지
1334	강훈식 의원	2024. 7. 3.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함.
10359	백선희 의원	2025. 5. 2.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중략) 아동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유니세프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인천광역시 지정대상에 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음.

기관명	내용
보건복지부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유니세프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지정 기준·절차·취소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
인천광역시	☐ 광역자치단체가 광역 단위의 아동정책을 총괄·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정대상에 시·도를 포함할 필요 ☐ 기존 인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 심사 부담을 고려하여 유사한 성격의 국내외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기존 유니세프 인증과 정부 지정의 이중구조, 명칭 혼선, 기존 인증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및 기존 평가자료·전문성 활용 문제가 있음 ☐ 정부 지정 대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지원 및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복지법」보다 「아동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

8. 보호자 대상 범죄 노출을 정서적 학대로 명시(고동진의원안)

-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제71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u>)	5. ----- ----- ----- ----- <u>--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u> -----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71조(벌칙) ①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 ----- ----- ----- ----- <u>가정폭력행위자를,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죄를 범하거나 아동에게 그 죄를 노출시킨 자를 말한다</u> -----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법 제17조)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음(법 제71조제1항). 각 금지행위 및 법정형은 다음 표와 같음.

<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및 법정형 >

금지행위(제17조)	법정형(제71조제1항)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함)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5호)¹⁹⁾.

□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처벌대상을 가정폭력행위자로 한정하고 있음(법 제71조제1항제2호)²⁰⁾.

□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시이고, 그 이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법률 개정은 2021년에 이루어졌음.

19)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20)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개정 후 (2021.12.21., 일부개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u>학대행위</u>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u>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u>

□ 그런데 위 개정 문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아동을 폭력에 노출시킨 사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아동학대의 공범이라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을 가정폭력행위자로 한정하는 개정이 2024년에 이루어졌음.

개정 전	개정 후 (2024.1.23., 일부개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서적 학대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

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로 판시하였고(아래 연번 1),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판시하였음(아래 연번 2).

□ 특히 가정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아동이 보는 앞에서 그 보호자를 폭행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 처벌한 사례도 있음(아래 연번 3).

〈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판례 및 결정례 〉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를 가리킴. 현실적으로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거나 의도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2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정서적 학대행위란 <u>아동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함.</u>
3	제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2809 판결	층간소음 갈등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u>아동인 피해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그 모(母)를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공포에 질리게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 항소기각(제주지방법원 2021노710)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대법원 2022도7458)</u>

□ 한편 현행법 제17조제5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폭력”을, 제71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의 “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 인용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의규정을 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u> 2. <u>“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u>“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u> 가. ~ 파. (생략) 4. <u>“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u>

□ 아울러 개정안이 범죄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보호자”는 현행법이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제3호)²¹⁾.

21) 「아동복지법」

- 이에 따라 보호자에는 부모와 후견인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학원 강사, 아이돌보미 등 업무나 고용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널리 포함됨.
- 반면 아동과 함께 살지 아니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친척 등은 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거나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보호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정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아동이 보는 앞에서 그 보호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아동이 직접 폭행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안과 공포,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앞서 살펴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²²⁾은 위와 같은 행위를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한 사례이므로 개정안은 처벌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새로 범죄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처벌 가능한 행위의 한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 동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해당 행위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에는 수범자가 그 위법성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수사·재판 실무에서 이를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수용 의견을, 법무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는 의견을,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중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수용 — 현행법의 가정폭력 노출 규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미한 자구 수정("가정폭력행위자를," →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외에는 수용함
법무부	□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 —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보호자를 대상으로 폭행·상해 등을 가하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하는 것은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등을 참조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아동권리보장원	□ 신중 검토 — 경미한 자구수정("가정폭력행위자를," → "가정폭력행위자 또는")이 없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형법」 제250조 등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요

9.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야외활동 지원 근거 마련 (이주영의원안)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6(보호대상아동의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37조의2(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u>

	<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야외활동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생활습관은 성인기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며, 최근에는 신체활동 부족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등에 따라 야외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WHO도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 (2020)에서 5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놀이, 스포츠, 계획된 운동, 걷기 및 자전거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활동은 신체적 건강, 심혈관·대사 건강, 골 건강,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²³⁾

23) WHO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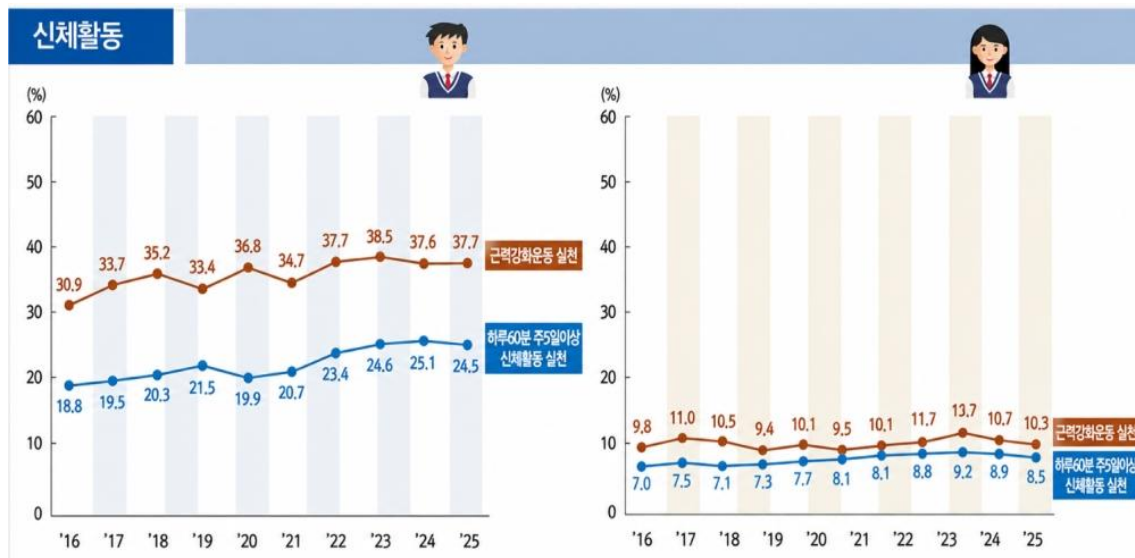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5-17 years)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hysical activity can be undertaken as part of recreation and leisure (play, games, sports or planned exercise), physical education, transportation (wheeling, walking and cycling) or household chores,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home, and community setting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hysical activity confers benefits for the following health outcomes: improved physical fitness (cardiorespiratory and muscular fitness), cardiometabolic health (blood pressure, dyslipidaemia, glucose, and insulin resistance), bone health, cognitive outcomes (academic performance, executive function), mental health (reduced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duced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5년 남학생 24.5%, 여학생 8.5%로 2024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소폭 감소(남 0.6%p↓, 여 0.4%p↓)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3일 이상)은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남 37.6%, 여 10.7%)으로 나타남.

< 신체활동 및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



- * 자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조사대상자: 중1~고3
- * 하루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분을
- * 주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 최근 7일 동안 근력강화운동(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기 들기, 아령, 철봉, 평행봉 등)을 3일 이상 한 분을

adiposity.

It is recommended that:

>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do at least an average of 60 minutes per day of moderate- to vigorous-intensity, mostly aerobic, physical activity, across the week.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certainty evidence

> Vigorous-intensity aerobic activities, as well as those that strengthen muscle and bone, should be incorporated at least 3 days a week.

Strong recommendation, moderate certainty evidence

□ 특히,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13.4%)과 근력강화운동 실천율(23.6%)은 미국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46.3%)과 근력강화운동 실천율(51.1%)보다 각각 32.9%p와 27.5%p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와 미국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및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비교 >

구분(고등학생)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3년)	차이	YRBS* (2023년)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전체	13.4%	< 32.9%p	46.3%
	남학생	19.8%	< 36.2%p	56.0%
	여학생	6.6%	< 29.4%p	36.0%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전체	23.6%	< 27.5%p	51.1%
	남학생	37.0%	< 26.8%p	63.8%
	여학생	9.4%	< 27.8%p	37.2%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플러스

* Youth Risk Behavior Survey(YRBS), 우리나라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 유사한 조사로 2년 주기 실시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과 야외활동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7)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7)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에는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방법·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편 현행법 제3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동복지법」 중 아동의 건강·체력·여가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u> 1. <u>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u>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u>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u>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7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활동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제3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 대상아동²⁴⁾과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24)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5)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은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음. 이는 0세부터 12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돌봄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임산부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아동발달사정에 따라 건강검진·예방접종·영양교육·체육활동·체험활동 등의 필수·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도 예산은 562억 4,100만원이고 지원인원은 2024년 기준 53,585명임.

□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3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 □ 다만, 현행 제35조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음

10.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피해아동 회복 지원 근거 마련 (윤준병의원안)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역 수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를 권고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관련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제5항 신설, 제46조제2항제7호 신설, 제59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운영할</u>

	<u>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u>⑤ 제4항에 따른 권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⑤ (생략)</u>	<u>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u>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략)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생략)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u>7.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u>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59조(비용 보조)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u>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u> 2. ~ 8. (생략)	----- ----- -----. 1. <u>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u>----- ----- ----- ----- 2. ~ 8. (현행과 같음)
---	---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법 제45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법 제46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함(법 제45조제2항 본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기준 경기 27개소, 서울 14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 10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6	14	6	3	6	2	3	2	1	27	6	4	6	7	5	4	8	2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45조제2항 단서). 이에 따라 서울 7개소, 부산 4개소 등 총 5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통합 설치되어 있음.

< 통합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연번	시도	통합 아보전명	소재지	관할 시군구
1	서울	동부아보전	동대문구	동대문구·광진구·종로구
2		중부아보전	마포구	마포구·용산구·중구·성동구
3		북부아보전	도봉구	도봉구·강북구
4		서북아보전	은평구	은평구·종로구
5		서남아보전	강서구	강서구·양천구
6		남부아보전	영등포구	영등포구·금천구
7		동남아보전	송파구	송파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
8	부산	동부산아보전	해운대구	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
9		북부산아보전	북구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10		남부산아보전	동구	동구·중구·서구·영도구·수영구·남구
11		중부산아보전	동래구	동래구·연제구

12	대구	대구광역시아보전	중구	중구·동구·수성구·군위군
13		대구남부아보전	달서구	달서구·남구
14		대구북부아보전	북구	북구·서구·달성군
15	인천	인천북부아보전	계양구	부평구·계양
16		인천남부아보전	남동구	연수구·남동구
17		인천서부아보전	서구	강화군·서구(검단)
18		인천중부아보전	동구	옹진군·중구·동구
19	광주	광주광역시아보전	서구	서구·광산구
20		빛고을아보전	북구	동구·남구·북구
21	전남	전라남도아보전	순천시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
22		전남서부권아보전	목포시	목포·영암·무안·신안
23		전남중부권아보전	나주시	나주·함평·영광·장성
24		전남북부권아보전	화순군	화순·담양·보성·곡성
25		전남남부권아보전	해남군	해남·장흥·강진·완도·진도
26	대전	대전광역시아보전	중구	동구·중구
27		북부아보전	유성구	유성구·대덕구
28	울산	울산광역시아보전	중구	중구·동구·북구
29		울산남부아보전	남구	남구·울주군
31	경기	경기남양주아보전	남양주시	남양주시·가평군
32		경기광주아보전	광주시	광주시·양평군
33		경기양주아보전	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34		경기포천아보전	포천시	포천시·연천군
35		경기이천아보전	이천시	이천시·여주시
3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아보전	춘천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37		강원동부아보전	강릉시	강릉시·평창군
38		강원남부아보전	동해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39		강원중부아보전	횡성군	횡성군·홍천군·영월군
40		강원북부아보전	속초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41	충북	충청북도아보전	청주시	청주
42		충청북도북부아보전	제천시	충주·제천·단양
43		충청북도남부아보전	옥천군	보은·옥천·영동
44		충청북도중부아보전	진천군	증평·진천·괴산·음성
45	충남	충남남부아보전	논산시	논산시·계룡시·서천군·금산군
46		충남서부아보전	홍성군	홍성군·보령시·예산군
47		충남동부아보전	공주시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8		충남북부아보전	서산시	서산시·당진시·태안군
49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아보전	전주시	완주군·진안군·무주군
50		전북동부아보전	남원시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51		정읍시아보전	정읍시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52	경북	경북동부아보전	포항시	포항시·청송군·영덕군·울진군·울릉군
53		경북서부아보전	구미시	김천시·구미시·상주시·고령군·성주군·칠곡군
54		경북남부아보전	경주시	경주시·영천시·경산시·의성군·청도군
55		경북북부아보전	안동시	안동시·영주시·문경시·영양군·예천군·봉화군
56	경남	경상남도아보전	창원시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57		경남서부아보전	사천시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58		통영시아보전	통영시	통영시·고성군

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보전'으로 기재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시군구 현황을 보면 2026년 6월 기준 서울 11개, 부산 10개 등 총 128개소의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시군구 현황 >

시도	시군구명
서울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대구	군위군, 남구, 달성군, 동구, 서구, 수성구
인천	강화군, 부평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남광주통합(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전남광주통합(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대전	대덕구, 동구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충남	계룡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추가 설치를 권고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나 재발방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안 제46조제2항제7호 신설), 이는 이미 현행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담·치료·교육 및 사후관리²⁶⁾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6)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태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또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현행 아동복지시설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⁷⁾.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의 의무 조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충청남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의 주체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는 등의 입장임.

27)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2~14. (생략)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개정안 제45조제4항 : 수정수용 - 개정안 제45조제4항은 권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용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로 확충 시 고려할 사항인 아동의 성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 제45조제5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시 「아동복지법」제59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중이므로 개정 실익 낮음 ○ 개정안 제46조제2항제7호 - 본조 제3항에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에 신설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실익 없음 ○ 개정안 제59조제1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 실익 없음
충청남도	○ 개정안 제45조제4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의 주체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국가아동 권리보장원	○ 개정안 제46조제2항제7호 - 개정안은 현행법 제4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수단으로 판단됨으로 별도의 업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음 - 다만,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 제안 ○ 개정안 제59조 제1항 : 불수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별도 병기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1.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시 정보제공 근거 명시

(박정하의원안)

-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사후관리 시 통합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생략) <u><신설></u>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및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법 제16조)²⁸⁾.

□ 나아가 현행법은 보호조치 종료로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²⁹⁾.

□ 보호조치 종료 사유별 사후관리 대상아동과 실적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원가정에 복귀한 대상아동은 473명이며 사후관리는 1,695건이 실시되었음.

28)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9)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보호조치 종료 및 원가정복귀, 사후관리 실적 >

(단위: 명, 건수)

구 분		2024년		2025년		2026.7월	
		대상아동	실적	대상아동	실적	대상아동	실적
보호 종결 사유	원가정 복귀	600	2,184	473	1,695	257	443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1,031	2,561	1,011	1,925	816	476
	입양 성립	219	634	179	335	27	20
	타법시설 입소	16	18	131	282	49	51
	기타	444	862	253	499	130	78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행복e음 시스템 추출('26.7월말))

집계 예시: A아동이 '24.10.31.에 원가정 복귀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24.11.1.에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 A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행복e음)은 '24년도 1회만으로 집계됨

□ 개정안은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통합서비스지원³⁰⁾,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³¹⁾ 및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30)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1)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장법」,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공하려는 각 제도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음.

< 개정안이 제공하려는 제도별 정보 >

제도(관련 규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통합서비스지원 「아동복지법」	• 0~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포함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돌봄 아동	• 아동발달 사정에 따른 지역자원과 연계한 필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자립지원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재해,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생계지원(최대 4개월), 의료지원, 주거지원(임시거소 지원 등), 기타(동절기 연료비, 장제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급여를 제공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구의 근로능력, 질환상태 등에 따라 상이)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 입원, 약제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연동)
청소년복지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 위기 청소년(9세 ~ 18세 이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대상자 가구 소득 기준 충족)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원가정 복귀 아동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고 복지서비스 안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제16조의2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주체로 하여 권한과 책임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은 그 지시에 따라 실제 지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개정안은 정보 제공의 주체를 "제1항에 따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바, 행정청이 아닌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보제공 권한을 직접 부여하고 있어 같은 조의 다른 항과 규정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복지지원 정보의 안내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경하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후관리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같은 조 내부의 문언을 통일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정보제공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12. 아동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확인 근거 마련(백종현의원)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아동위원) ① ~ ④ (생략) <u><신 설></u> <u>⑤ (생 략)</u>	제14조(아동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으로 두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 아동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명예직 봉사자로서,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상담·지도, 아동복지에 관한 원조와 지도,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협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임(법 제14조)³²⁾.

32) 「아동복지법」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각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데(법 제 14조제5항), 현재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위원의 업무로는 관할구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학대 예방 활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관할 기관에 보호조치 요청 등이 있음.

<각 지자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 업무 사례>

지자체	업무
서울시 강동구	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4.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산시 영도구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즉시 구, 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대전시 동구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등
전남 광주 동구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	업무
	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 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강화군	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4. 강화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파악되는 아동위원은 2,557명이고 여성이 78.8%이며 직종 기준으로는 주부가 2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아동위원 현황〉

(단위: 명, %)

아동위원 수	성별		직종				
	남	여	주부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
3,386 (100.0%)	682 (20.1%)	2,704 (79.9%)	823 (24.3%)	87 (2.6%)	358 (10.6%)	418 (12.3%)	1,700 (50.2%)

주: 8.26 현재 현황 제출한 시군구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아동위원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자질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두거나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절차·범위 등을 준용하고 있음.

○ 참고로 아동안전 보호인력이란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함(법 제33조).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이 준용하고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절차·범위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 경력의 확인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 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
2.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 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
3.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 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5. 법 제17조제2호의 죄

□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아 동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부 칙 제2조제1항), 이 법 시행 이전에 아동위원이 된 사람이 범 죄경력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이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2조제2항).

개정안 부칙
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아동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이 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위원이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解囑)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조회가 불가능했던 제도 운영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13. 피의자 체포·구인 시 피보호아동 확인 의무 부과

(백혜련의원)

-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인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은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5조(보호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⑥ ----- ----- ----- --제7항-----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 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⑩ (생략)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⑦ ~ ⑪ (현행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⑫ 제4항----제7항----- ----- -----제10항----- --제11항----- ----- ----- --.
--	---

□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상담·지도,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제1항)33).

□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함께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33)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733,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4조의5(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 ①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제213조에 따라 피의자를 인도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보호아동”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피보호아동 주소지 및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시 피의자가 이미 석방된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01조의2제1항 외의 피의자가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경우 검사는 피보호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피의자와의 동거 여부 등 피보호아동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5년 기준 신규 보호대상아동 1,975명 중 부모의 수용시설 입소로 인해 보호조치된 아동은 135명(6.8%)임.

○ 신규 보호대상아동은 2021년 3,437명에서 2025년 1,975명으로

42.5% 감소하였으나, 보호자 수감을 사유로 한 아동은 같은 기간 99명에서 135명으로 36.4%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2.9%에서 6.8%로 상승하였음.

< 신규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 >

(단위: 명, %)

연도	합계	학대	부모 사망	미혼부모 혼외자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질병	보호출산	유기	비행가출 부랑	부모 이혼 등
'25	1,975	886 (44.9)	276 (14.0)	164 (8.3)	135 (6.8)	100 (5.1)	73 (3.7)	97 (4.9)	19 (1.0)	64 (3.2)	161 (8.2)
'24	1,978	869 (43.9)	268 (13.5)	219 (11.1)	140 (7.1)	105 (5.3)	94 (4.8)	46 (2.3)	30 (1.5)	36 (1.8)	171 (8.6)
'23	2,054	785 (38.2)	270 (13.1)	259 (12.6)	147 (7.2)	169 (8.2)	89 (4.3)		88 (4.3)	14 (0.7)	232 (11.3)
'22	2,289	1,103 (48.2)	235 (10.3)	252 (11.0)	110 (4.8)	139 (6.1)	70 (3.1)		73 (3.2)	11.0 (0.5)	296.0 (12.9)
'21	3,437	1,660 (48.3)	275 (8.0)	366 (10.6)	99 (2.9)	170 (4.9)	101 (2.9)		117 (3.4)	293 (8.5)	356 (10.4)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서는 보호자의 체포·구금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긴급한 경우 시·군·구 판단하에 긴급 일시보호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 보호자 부재 등 아동학대 이외의 사유로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시설 내 아동 간 갈등, 위탁부모 수술,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체포·구금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긴급한 경우 시·군·구 판단하에 긴급 일시보호 실시
 - * 긴급 일시보호는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긴급 일시보호 이후 지체없이 보호조치 변경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6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104.

□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의 체포·구금 여부를 곧바로 인지하기는 어려운 점, 보호자가 체포·구인될 경우에는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보호 공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법제적으로 개정안이 사용하는 “피보호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피보호아동”은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함께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문구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 그런데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률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³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피보호아동”이라는 문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5에 따라 통보를 받은 아동”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34)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률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하위법령인 국회규칙 등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5, p.232.)

14. 아동보호 실태조사 시 대면·신원확인 의무화 및 조사권한 강화(이춘석의원안)

- 개정안은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및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주소·거소 출입 및 조사·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항·제4항 및 제71 조제3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 ② (생략)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u>이 경우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u>
<신설>	④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u>

④ ~ ⑦ (생략)

제71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거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71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거나, 자

1. (생 략)	<u>료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u>
2. ~ 7. (생 략)	<u>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실시 기록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음(법 제15조의4제1항).

□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위 자료·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35).

35)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 이와 같이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 하는데,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하여 발굴·조사된 사례는 총 71만 8,518명으로, 그 중 10만 3,070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었으며 751명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음.
- 개정안은 e아동행복지원사업 중 양육환경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그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자가 다른 아동을 조사대상 아동인 것처럼 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신원확인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분증이 없는 영유아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는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나아가 해외출국한 아동의 경우와 같이 대면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조사대상 아동에 대해 대면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조사·질문 규정이 있음(법 제66조 및 제71조제3항제7호)³⁶⁾.

○ 그런데 법 제66조의 조사 등은 아동 매매 가능성 등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개정안의 실태 조사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조사로서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예측·발굴하는 것으로 아동학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실시되는 상황임.

○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등의

36) 「아동복지법」

제66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³⁷⁾ 제재수단으로 형벌보다 과태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조사 대상 아동 전체에 대해 대면 조사 및 신원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장인력의 한계 및 아동의 신원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반발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조사 대상 아동 전체에 대해 대면 조사 및 신원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장인력의 한계 및 아동의 신원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반발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안 제15조의4제3항 후단) ○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자의 조사 수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용함(안 제15조의4제4항) ○ 아동학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의 실태조사이므로 조사 거부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기보다는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안 제71조제3항제1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며 시스템 적용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이견없음

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15.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사업 국비 우선 보조(곽규택의원)

- 개정안은 국가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9조(비용 보조) ----- ----- ----- ----- ----- ---.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가정위탁 보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9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위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각 호별 사업 내용 및 2026년도 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법 제59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2026년도 예산 >

각 호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 (백만원, %)		
		총계	국비(보조율)	지방비(보조율)
1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41,553	56,621(40%)	84,932(6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164	4,082(50%)	4,082(50%)
2	가정위탁	9,860	6,779 (서울 40%, 지방 70%)	3,081 (서울 60%, 지방 30%)
3	사업지도, 홍보	-		

4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290	290(100%)	-
4의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1,050	525(50%)	525(50%)
5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73,092	56,241 (서울 50%, 지방 80%)	16,851 (서울 50%, 지방 20%)
6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1,237	838 (서울 50%, 지방 70%)	399 (서울 50%, 지방 30%)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 구축	24,447	16,339 (서울 50%, 지방 70%)	8,108 (서울 50%, 지방 3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51,000	34,068 (서울 50%, 지방 70%)	16,932 (서울 50%, 지방 30%)
7	자산형성, 관리	234,080	155,255 (서울 30%, 지방 70%)	78,825 (서울 70%, 지방 30%)
8	아동복지단체	-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인구감소지역 현황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
대전	-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주: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 2024-15호)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소멸의 위험에 놓여 있으면서도 지방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 공모 시 일

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³⁸⁾.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지역별 아동복지 수요, 타 법령 체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인제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외에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우선 보조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지역별 아동복지 수요, 타 법령 체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이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례 및 국고 보조율 우대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어 아동복지법에 별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근거 신설의 실효성이 낮음 □ 인구감소지역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재량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다)된 반면, 해당 개정안은 당연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재량권을 제한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
강원도 인제군청	인구감소 위험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분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우선 보조한다는 수정안 제시

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6.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주거·돌봄 명시

(이연희의원안)

- ☐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의 내용에 "주거"와 "돌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u>치료</u>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 ----- ----- ----- ----- ----- ----- ----- <u>치료, 주거, 돌봄</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성장·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37조제1항).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위 통합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별로 5명에서 8명의 전담 사례관리팀(전담공무원 2~3명, 공무원직 사례관리사 3~5명³⁹⁾)이 운영되어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아동발달 사정에 따라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예산은 562억 4,100만원이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그 밖의 지역 80%임.

○ 필수·맞춤서비스로는 건강검진·예방접종, 기초학습지원, 종합심리검사, 부모교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필수·맞춤서비스 예시
신체/건강	건강검진·예방접종, 치과·안과 진료, 영양교육 및 성장발달, 체육활동 지원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지원, 독서지도, 도서대여, 방문미술지도, 인지장애 및 언어치료 서비스 등
정서/행동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정신건강 서비스, 체험활동, 특기적성 및 진로지도,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부모/가족	부모교육, 임신부 산전·산후검진, 양육상담 등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특화	아픈부모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가족돌봄 특별 지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39) 2025년 기준 229개 시·군·구에 사례관리사 총 923명 배치 중

○ 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0세부터 12세 사이의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한부모) 아동 및 그 가족이지만, 예외적으로 13세 이상의 아동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⁴⁰⁾.

□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통합서비스의 종류에 주거와 돌봄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주거 불안이나 돌봄 공백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에 따른 사업을 통해서 주거나 돌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드림스타트 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서비스 중 주거나 돌봄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면, 주거 분야에서는 정리·수납, 집수리, 이사비, 해충방역 및 도배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공부방, 결식우려 아동의 주말 밑반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40) 사례회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현행 사업 중 주거·돌봄 관련 서비스 >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용
주거	주거환경 관리	주택개량, 주거내부환경개선 등
	주거지 제공 및 이주 지원	임대주택지원, 이사비지원 등
돌봄	일상생활유지·돌봄지원	주거내부환경개선, 생필수품비 지원, 가사·간병 지원 등
	시설보호	장·단기시설보호, 주·야간보호 등
	경제생활지원	가사·간병지원, 생활용품지원, 식료품비 지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돌봄·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주거·돌봄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돌봄·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개정안 수용
국가아동 권리보장원	현행법상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근거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주거(주거환경 관리 등), 돌봄(양육지원,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되고 있어, 주거, 돌봄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17. 음주운전 중 아동 동승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명시

(장종태의원)

- 개정안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u>노출시키는 행위</u> 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 ----- ----- ----- <u>노출시키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u>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법 제17조)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음(법 제71조제1항). 각 금지행위 및 법정형은 다음 표와 같음.

<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및 법정형 >

금지행위(제17조)	법정형(제71조제1항)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함)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5호)⁴¹⁾.

□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처벌대상을 가정폭력행위자로 한정하고 있음(법 제71조제1항제2호)⁴²⁾.

□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시이고, 그 이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법률 개정은 2021년에 이루어졌음.

4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42)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개정 후 (2021.12.21., 일부개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u>학대행위</u>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u>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u>

□ 그런데 위 개정 문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아동을 폭력에 노출시킨 사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아동학대의 공범이라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을 가정폭력행위자로 한정하는 개정이 2024년에 이루어졌음.

개정 전	개정 후 (2024.1.23., 일부개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u>한 자</u>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u>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u>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서적 학대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로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판시하였음.

〈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판례 및 결정례 〉

구분	주요 내용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제5호의 행위는 <u>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를</u> 가리킴. 현실적으로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정서적 학대행위란 <u>아동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u> 의미함.

□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음주 상태로 아동을 동승하고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겁을 먹게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결한 사례가 있음⁴³⁾.

4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 5021, 5122(병합)

○ 동 판례는 차량에 피해아동을 승차시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78km 상당의 속도로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중 이륜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본 사건임.

□ 개정안은 판단능력과 위험 대처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아동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시키는 행위가 아동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정신적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동승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음주운전 차량에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가 직접 발생시키는 위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고, 정신적 불안이나 공포는 아동이 음주운전이나 위험한 운행상황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법 적용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 행위를 예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개별 유형을 특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를 법률에 유형화하여 명시할 경우 다른 금지 행위와 규정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주취운전에 아동을 동승시킨 행위는 아동을 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체 건강을 해칠 위험을 초래한 행위인 신체학대로 볼 수도 있는 바, 개별 유형을 특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영아의 경우 음주 운전을 인지하기 어려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정서적 학대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
국가아동 권리보장원	□ 최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음주운전 중 아동을 동승시킨 행위에 대하여, 이를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행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를 법률에 유형화하여 명시할 경우 다른 금지 행위와 규정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8.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명확화 및 평가 기반 개선 권고 (김미애의원안)

-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까지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제5호, 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략)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5. 피해아동 가정의 <u>사후관리</u> 6.·7. (생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u>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u> 6.·7. (현행과 같음)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u>성과평가</u> 등) ① 보건복지부장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u>평가</u> 등) ① -----

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평가하여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	---

-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법 제45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법 제46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함(법 제45조제2항 본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기준 경기 27개소, 서울 14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 10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6	14	6	3	6	2	3	2	1	27	6	4	6	7	5	4	8	2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45조제2항 단서). 이에 따라 서울 7개소, 부산 4개소 등 총 5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통합 설치되어 있음.

< 통합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연번	시도	통합 아보전명	소재지	관할 시군구
1	서울	동부아보전	동대문구	동대·문구·광진구·중랑구
2		중부아보전	마포구	마포구·용산구·중구·성동구
3		북부아보전	도봉구	도봉구·강북구
4		서북아보전	은평구	은평구·종로구
5		서남아보전	강서구	강서구·양천구
6		남부아보전	영등포구	영등포구·금천구
7		동남아보전	송파구	송파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
8	부산	동부산아보전	해운대구	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
9		북부산아보전	북구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10		남부산아보전	동구	동구·중구·서구·영도구·수영구·남구
11		중부산아보전	동래구	동래구·연제구
12	대구	대구광역시아보전	중구	중구·동구·수성구·군위군
13		대구남부아보전	달서구	달서구·남구
14		대구북부아보전	북구	북구·서구·달성군
15	인천	인천북부아보전	계양구	부평구·계양
16		인천남부아보전	남동구	연수구·남동구
17		인천서부아보전	서구	강화군·서구(검단)
18		인천중부아보전	동구	옹진군·중구·동구
19	광주	광주광역시아보전	서구	서구·광산구
20		빛고을아보전	북구	동구·남구·북구
21	전남	전라남도아보전	순천시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
22		전남서부권아보전	목포시	목포·영암·무안·신안
23		전남중부권아보전	나주시	나주·함평·영광·장성
24		전남북부권아보전	화순군	화순·담양·보성·곡성
25		전남남부권아보전	해남군	해남·장흥·강진·완도·진도
26	대전	대전광역시아보전	중구	동구·중구
27		북부아보전	유성구	유성구·대덕구

28	울산	울산광역시아보전	중구	중구·동구·북구
29		울산남부아보전	남구	남구·울주군
31	경기	경기남양주아보전	남양주시	남양주시·가평군
32		경기광주아보전	광주시	광주시·양평군
33		경기양주아보전	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34		경기포천아보전	포천시	포천시·연천군
35		경기이천아보전	이천시	이천시·여주시
3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아보전	춘천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37		강원동부아보전	강릉시	강릉시·평창군
38		강원남부아보전	동해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39		강원중부아보전	횡성군	횡성군·홍천군·영월군
40		강원북부아보전	속초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41	충북	충청북도아보전	청주시	청주
42		충청북도북부아보전	제천시	충주·제천·단양
43		충청북도남부아보전	옥천군	보은·옥천·영동
44		충청북도중부아보전	진천군	증평·진천·괴산·음성
45	충남	충남남부아보전	논산시	논산시·계룡시·서천군·금산군
46		충남서부아보전	홍성군	홍성군·보령시·예산군
47		충남동부아보전	공주시	공주시·부여군·청양군
48		충남북부아보전	서산시	서산시·당진시·태안군
49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아보전	전주시	완주군·진안군·무주군
50		전북동부아보전	남원시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51		정읍시아보전	정읍시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52	경북	경북동부아보전	포항시	포항시·청송군·영덕군·울진군·울릉군
53		경북서부아보전	구미시	김천시·구미시·상주시·고령군·성주군·칠곡군
54		경북남부아보전	경주시	경주시·영천시·경산시·의성군·청도군
55		경북북부아보전	안동시	안동시·영주시·문경시·영양군·예천군·봉화군
56	경남	경상남도아보전	창원시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57		경남서부아보전	사천시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58		통영시아보전	통영시	통영시·고성군

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보전'으로 기재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현행법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2조제7항 제4호). 나아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8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⑦ <u>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 3. (생략) 4. <u>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u> 5. ~ 7. (생략)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u>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학대피해아동의 학대위험요인 감소와 심리·정서적 안정,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가정 중심의 맞춤형 집중 사례관리 프로그램인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방문 똑똑! 마음 톡톡!)을 개발·보급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기초상담 1~2회기, 대상자와 가정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9회기, 사후점검 2회기로 구성되며, 수행기관은 2023년 43개소에서 2026년 6월 90개소로 늘어났음.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방문 똑똑! 마음 톡톡!)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가정, %)

구분		'23년	'24년	'25년	'26.6월 기준
수행기관 수		43개소	81개소	86개소	90개소
방문형 프로그램	목표	1,200가정	2,400가정	2,595가정	2,680가정
	실적	1,449가정(121%)	2,715가정(113%)	2,834가정(109%)	2,254가정(84%)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에 “피해아동 가정의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확충·개선을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현행 기관별 역할분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동복지법」 제22조제7항제4호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규정한 것은 개별 기관별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물론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의 인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사후관리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나아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개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확충 및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업무 실적 평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인 반면, 개정안이 규정하는 설치 실태 평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임.

- 따라서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는 현재와 같이 법 제47조에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권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정한 제45조에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제46조제2항제5호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정안 제47조제1항에 대하여는 수정수용, 개정안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는 수용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개정안 제47조제3항에 대하여는 아동권리보장원 확충 시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중이므로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개정안 제46조제2항제5호 : 신중검토 - 사후관리 업무는 「아동복지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7항제4호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규정 - 이와 같이 현행법률상 프로그램 개발을 보장원의 업무로 규정한 취지는 지자체별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별 아보전이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현행과 같이 보장원이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 제47조제1항 : 수정수용, 개정안 제47조제2항 및 제4항 : 수용 - 아보전 인력 부족으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공감함 - 다만, 아보전의 설치·운영 실태 평가는 평가의 범위가 모호하여, 지자체의 행·재정 부분을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음 ※ 아보전 설치 주체 : 시·도 및 시·군·구의 장 - 따라서, '설치·운영 실태'를 '운영 실태'로 수정하여 평가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 제47조제3항 : 신중검토 - 아보전 확충 시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아보전에 대한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 중이므로 개정의 실익 낮음
전남광주통합시(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개정안 제46조제2항제5호 : 수정수용 - 현행 「아동복지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제5호에 열거된 사항은 예방사업을 열거한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사항이므로, 개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개정안 제46조제2항제5호 : 수정수용 ○ 사후관리 → 사례관리 - 사후관리는 학대사건 이후 지속적 보호·지원 책임에 중점을 둔 용어임 - 현재 아보전은 아동학대전문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 아동·가족·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개입 즉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 '사례관리'가 더 적합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제공 - 이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개발한 사례관리 모형과 운영 단체(기관 포함)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피해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 법 제22조제7항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역할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음

	□ 개정안 제47조 : 신중검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아동학대 발생 건수, 사례관리 건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 관할지역의 면적, 지리적 접근성, 사례관리 대상자까지의 이동거리와 이동시간, 실제 상담원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업무량 등
국가아동권리 보장원	□ 개정안 제46조 제2항 제5호 : 신중검토 - 프로그램 개발은 법 제4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 수행 전반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판단되므로, 제5호에만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 개정안 제47조 : 일부 수용 - 아보전 설치·운영 평가대상은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평가의 대상, 목적이 다르며, 그 기준 또한 달리 적용되어야 함 ※ 설치·운영 평가는 현행법 제45조에 규정하여 평가

문 의 처
02)6788-5500